

변경 대비표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매크로채권전략 증권투자신탁[채권]

- 변경 사항 : ① 부책임운용역 추가(문성호)
 ② 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③ 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 실제 수익률 변동성
 ④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효력발생일 : 2025. 10. 22.

□ 변경 내용

구분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표지			
투자 위험 등급	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실제 수익률 변동성
요약정보			
투자 위험 등급	운용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실제 수익률 변동성
투자비용	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2025. 8. 29. 기준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	2025. 8. 29. 기준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수익률)	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2025. 8. 29. 기준
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역 추가	(추가)	문성호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4. 8. 31. 기준	2025. 9. 30. 기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부책임운용역 추가	〈신 설〉	2025. 10. 22. 부책임운용역 추가



트러스톤자산운용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부책임운용역 추가 최근 기준으로 기재	(추가) <u>2024. 8. 31. 기준</u>	<u>문성호</u> <u>2025. 9. 30. 기준</u>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 합투자기구에 관 한 사항	부책임운용역 추가 최근 기준으로 기재	(추가) <u>2024. 8. 31. 기준</u>	<u>문성호</u> <u>2025. 9. 30. 기준</u>
5. 운용전문인력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운용역 추가	〈신 설〉	<u>문성호 (2025.10.22~현재)</u>
10.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 기구에 적합한 투 자자 유형	운용기간 3년 경과 에 따른 투자위험 등급 산정기준 변경	〈신 설〉	<u>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 액(97.5% VaR 모형 사용) :</u> <u>7.61%</u>
13. 보수 및 수수 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 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 근 기준으로 기재 제3기 재무제표 확 정에 따른 갱신	- -	<u>2025. 9. 30. 기준</u> <u>2025. 8. 29. 기준</u>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 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 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 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 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 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 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 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 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 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 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신 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	---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5. 8. 29. 기준</u>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5. 8. 29. 기준</u>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u>2025. 8. 29. 기준</u>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4. 8. 31. 기준</u>	<u>2025. 9. 30. 기준</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 기준으로 기재	<u>제26기(2023.12.31)</u> <u>제25기(2022.12.31)</u>	<u>제27기(2024.12.31)</u> <u>제26기(2023.12.31)</u>
1. 집합투자업자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4. 8. 31. 기준</u>	<u>2025. 9. 30. 기준</u>

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	--	--	--